

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,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

-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, 11월 24일부터 시범운영 개시
- 은행 및 보험사, 연기금 등도 위탁거래 참여 가능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
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.

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’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

또한,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,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*,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,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.

* 집합투자업자, 투자매매업자, 은행 및 보험회사, 신탁업자 등

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(2024년)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(NH)투자증권을 선정하고,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.

이에 따라, 배출권등록부*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,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.

*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,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·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의 등록부

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(직접→위탁) 신청을 하고,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.

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~12시까지이며,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*된다.

* (경매) 13~14시 → 14~15시로 변경, (장외거래) 13~17시 → 14~17시로 변경

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,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 또한,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.

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“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,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마루 (044-201-6580)
		담당자	사무관	강정훈 (044-201-6591)
	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	책임자	팀 장	최형욱 (043-714-75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임 (043-714-7521)

□ **배경**

- 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(‘23.9.)」을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추진, ’24.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위탁거래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
-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, 제3자*(금융기관·연기금 등)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** 마련

*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, 투자매매업자(증권사), 은행 및 보험회사, 신탁업자, 연기금

** 배출권시장의 건전성 등을 위해 제3자는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만 허용(시행령 제31조)

□ **경과**

- 위탁거래 시범사업자 선정(‘24.3.) → 기관간* 업무협약 체결(‘24.6.) → 기관별 시스템 개발 완료(~’25.8) → 모의시장 테스트(~’25.11) → 11.24(월) 시스템 본격 운영

* 기후부,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, 한국거래소, 코스콤(증권계 IT 전문회사)

□ **위탁거래 개요**

- (개요) 할당업체·제3자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소 회원으로서 직접 거래하던 방식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위탁하여 거래하는 방식
- (대상) 할당업체는 직접·위탁거래 중 1개 방식만을 선택 가능하며, 제3자(금융기관 등)는 위탁거래만 가능(1개 중개회사와만 거래 가능)

- (변동사항) 경매시간 및 장외거래 처리시간이 1시간씩 순연*

* (경매) 기존 13~14시에서 14~15시로 변경 (장외거래) 기존 13~17시에서 14~17시로 변경

□ **기대효과**

- 거래편의성 제고, 거래시장 참여 확대, 선물·금융상품 출시 기반 마련